

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 보고서

2016년 10월 27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0월 11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6.10.2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)

가. 상정 이유

전기자동차 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의 설치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1)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(안 제3조, 제5조 등)
- 2) 주차장법 개정 내용 반영(안 제5조제2항)
- 3)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(안 제10조의4)

4) 공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12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조례 개정 취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의 시행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임.

나. 주요 검토 내용

- 안 제10조의4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신설
 -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관련 설치기준 및 감면사항을 정한 조항으로써,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최대 주차대수는 10대로 한정함.
- 안 제12조의2(공유주차구획의 운영)를 신설
 -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주차 공간 공유 사업 추진하되,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.

- 안 제5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의 [별지 1] 제22호 ~ 제24호 신설
 - 거주자우선주차장 방문자 이용요금은 급지별 시간요금제를 적용하되, 주차장 상황에 따라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단순요금제(4시간 미만 2,000원, 4시간 이상 5,000원)로 운영함
 - 종로구와 약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이며, 30분 초과시부터 5분마다 100원씩 가산함.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내 주차요금 면제, 1시간 초과시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% 할인함.
-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어려운 용어를 법체처,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쉽게 풀어서 표현함.

☞ 종합의견 :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종로구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

□ 공영주차장 현황 총괄

(2016.9.현재)

총 계	거주자우선주차장(면)			시간제주차장(면)		
	계	노 상	노 외	계	노 상	노 외
3,421	3,112	1,940	1,172	309	219	90

□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

구 분	총구획수	노상주차장		노외주차장	
		구간	구획수	개소	구획수
계	3,112	142	1,940	34	1,172

○ 동별 노상주차장 현황 - 17개동 142구간 1,940면

청운호지동	구간수	14	가회동	구간수	9	창신2동	구간수	8
	구획수	221		구획수	223		구획수	130
사직동	구간수	14	1~4가	구간수	10	창신3동	구간수	2
	구획수	157		구획수	98		구획수	50
삼청동	구간수	14	5~6가	구간수	8	승인1동	구간수	4
	구획수	116		구획수	129		구획수	47
부암동	구간수	8	이화동	구간수	14	승인2동	구간수	6
	구획수	126		구획수	133		구획수	42
평창동	구간수	17	혜화동 명륜3가	구간수	9			
	구획수	219		구획수	172			
무악·교남동	구간수	3	창신1동	구간수	4			
	구획수	68		구획수	9			

○ 노외주차장 - 34개소 1,172면

(건물식 12개소 651면, 비건물식 14개소 327면, 협력주차장 8개소 194면)

[입체식] - 12개소 651면

건물명	소재지	주차 형태	주차면수 (연면적:㎡)	구조	비 고
삼청공영	삼청동 5-2	1층2단	27/(201.6)	철골조	주차차단기 2대 CCTV 8대
행촌공영	행촌동 210-35	1층2단	12/(276.7)	철골조	
이화공영	이화동 13-2	3층4단	101/(3,468.03)	철근콘트리트	주차차단기 3대 요금 정산기 1대(방문주차) CCTV 20대
동송공영	동송동 31-35	1층2단	26/(661.5)	철골조	CCTV 4대
명륜1가 제1공영	명륜1가 5-14	2층3단	51/(1,743.47)	철근콘트리트	주차차단기 2대 요금 정산기 1대(방문주차) CCTV 20대
명륜1가 제2공영	명륜1가 7-69	2층3단	40/(1020.93)	철근콘크리트	CCTV 9대
명륜3가 공 영	명륜3가 1-29	2층3단	42/(552.4)	철골조	CCTV 8대 주차차단기 3대
창일공영	창신동 82	2층3단	86/(2,116.26)	철골조	주차차단기 2대 요금 정산기 1대(방문주차) CCTV 16대
창이공영	창신동 23-611	2층3단	20/(405)	철골조	CCTV 4대
낙산공영	창신동 23-343	1층2단	50/(726)	철근콘크리트	CCTV 7대
송인1기계 공 영	송인동 55-2	기계식	38/(272.3)	철근콘크리트	
신교공영	신교동 66	지하4	158/(6,052.41)	철근콘크리트 /지하4,지상4	주차차단기 2대 요금 정산기 1대(방문주차) CCTV 42대

[비입체식] - 14개소 327면

주차장명	소재지	주차형태	주차면수 (연면적:㎡)	비고
누상공영	누상동 166-50	평면식	45/(1,217)	주차차단기 1대 CCTV 6대
효자공영	효자동 68-1	평면식	26/(790)	주차차단기 1대 CCTV 4대
송인3공영	송인동 277-8	평면식	27/(976.7)	주차차단기 2대 요금정산기 1대(방문주차) CCTV 7대
창신3제1공영	창신3동 23-346	평면식	77/(2,436)	
창신3제2공영	창신3동 23-341	평면식	25/(614)	
송인2공영	송인동 746	평면식	15/(295)	폐쇄예정지 (미포함)
교남공영	행촌동 1-53	평면식	28/(298.6)	주차차단기 1대 CCTV 6대
삼청 제3공영	삼청동 157-6	평면식	4/(128)	
명륜1가 제3공영	명륜동1가 7-32	평면식	18/(406.3)	주차차단기 1대
동송동 제2공영	동송동 2-2	평면식	10/(390)	주차차단기 1대
옥인공영	옥인동 47-469	평면식	15/(430)	주차차단기 1대 CCTV 4대
사직공영	사직동 262-84	평면식	20/(521.3)	주차차단기 1대 CCTV 4대
부암공영	부암동 365-1	평면식	9/(237)	CCTV 4대
송인4공영 (19-4,19-5구간)	송인동 471외 2필지	평면식	23/(648)	

[협력주차장] - 8개소 194면

주차장명	소재지	주차형태	주차면수	비 고
옥인 유희지-1	옥인동 47-140	평면식	4면	업무협약
옥인 유희지-2	옥인동 47-45 외 1필지	평면식	4면	업무협약
방송통신대학교	동송동 86	건물식	80면 (전일50,야간30)	업무협약
독립문초등학교	무악동 46-82	평면식, 건물식	26면(야간전용)	야간배정, 주말무료
종로센트레빌	송인1동 2-1	건물식	10면	업무협약
홍익대학교	연건동 128-8	건물식	30면	홍익대측에서 요금수납
동대문종합시장	종로 266 옥상층	건물식	30면	4년(~2019.11.30)간 공공기여
서울디자인센터			10면	

□ 시간제 공영주차장 현황 - 14개소 309면

○ 노 상 : 11개소 219면 / 노 외 : 3개소 90면

구분	연번	주차장명	위 치	급지	면수	운영시간			위탁료(천원) / 위탁자	운영 주체
						평 일	토요일	일/ 공휴일		
합 계		14개소			309					
노 상	1	태 화 관	인사동 194-39	1	16	10-20시	09-15시	무료		공단
	2	한미빌딩옆 (위탁)	인사동 194-39	1	9	10-20시	09-15시	무료	28,370 (고광호)	민간 재위탁
	3	탑골공원	종로2가 38-1	1	15	10-22시	10-22시	10-18시		공단
	4	종로3가역	봉익동 36	1	59	10-20시	09-15시	무료		공단
	5	광희문빌딩 (위탁)	당주동 145	1	16	10-22시	10-16시	무료	165,500 엘씨엘(주)	민간 재위탁
	6	종 각 (위탁)	관철동 45-6	1	13	10-22시	10-18시	무료	166,999 (문종남)	민간 재위탁
	7	원서공원 (위탁)	원서동 206	2	17	09-19시	09-15시	무료	62,900 (설동욱)	민간 재위탁
	8	삼청공원앞	삼청동 25-1	2	18	09-21시	09-17시	무료	100,210 (조형래)	민간 재위탁
	9	세운상가밀	장사동 116-3	1	34	09-19시	09-15시	무료		공단
	10	열린마당옆	중학동 111	1	13	09-19시	09-15시	무료	58,300 (한지선)	민간 재위탁
	11	낙산공원	창신2동 703	5	9	24시	24시	24시	12,960 종로운수(주)	민간 재위탁
노 외	12	서인사마당	견지동 85-18	1	45	08~22시				공단
	13	명광교회옆 (위탁)	명륜3가 12	2	8	24시간(연중무휴)			21,550 (효인산업(주))	민간 재위탁
	14	구기동139-9 (위탁)	구기동 139-9	3	37	무료	08-18시	08-18시	22,600 (남연우)	민간 재위탁

□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순위 배정기준

- 순위제 + (동순위인 경우) 점수제

구 분	배 정 순 위
1순위	종로구 거주자 중 장애인(1~3급)·국가유공자·고엽제 후유의증환자
2순위	전통한옥소지자, 반일제(주/야간) 신청자, 주차 커플제 신청자
3순위	종로구 거주자 (주민등록자)
4순위	비거주자(사업자, 근무자) 중 장애인 (1~3급)·국가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
5순위	비거주자 중 사업자(사업자등록자)
6순위	비거주자 중 근무자

- 주차 커플제 개선안 도입(2016년 하반기부터 적용)

구분		현 행	개선안	할인
2순위	주차량	종로구 전입자(거주자)	5년이상 종로구 거주자(주민등록)	30%
	종차량	종로구 거주자,사업자,근무자	종로구 거주자, 사업자, 근무자	
3순위	주차량	-	5년미만 종로구 거주자(주민등록)	30%
	종차량	-	종로구 거주자, 사업자, 근무자	
3순위	주차량	-	종로구 거주자(주민등록)	미할인
	종차량	-	타 지역 참여자	

⇒ 동 순위시 가감점제 적용

가감점	가 점	관내 거주기간	1년 미만	0점	
			1년 이상 10년 미만	1년마다 1점씩 가산	
			10년 이상	10점	
		경차(배기량 1,000cc미만)	3점		
		전자태그등록자	5점		
		65세 이상 고령자	3점		
		다둥이 가족	3점		
	감 점	거주동 외 타동구획 신청		-10점	
		장기연속배정	1회 배정	-4점	
			2회 연속 배정	-6점	
			3회 연속 배정	-8점	
4회 이상 연속 배정			-10점		

- 리스차량 : 계약 명의자 기준으로 순위제 적용

- 동일 배점시 우선 순위 : 거주자간(주차량) - ① 전입일 ② 나이순

사업자간 - 사업자등록일

근로자간 - 재직일

□ **공영주차장 (거주자 우선, 시간제 주차장) 현황**

연 번	주차장명	소재지	주차 면수	구분	급지	요금 (5분당)	운영시간			비고
							평일	토요일	공휴일	
1	태화관앞	인사동 194-3 9	16	노상	1	500원	10:00 ~20:00	09:00 ~15:00		공단위탁
2	한미빌딩 앞	인사동 194-3 9	9	노상	1	500원	10:00 ~20:00	09:00 ~15:00		민간 재위탁(28, 370천원, 고광호,~16. 10.13)
3	탑골공원 옆	종로2 가 38-1	15	노상	1	500원	10:00 ~22:00	10:00~ 22:00	10:00 ~18:00	공단위탁
4	종로3가역	봉익동 36	59	노상	1	500원	10:00 ~22:00	09:00 ~17:00		공단위탁
5	광화문빌 딩	당주동 145	17	노상	1	500원	10:00 ~22:00	10:00 ~16:00		민간 재위탁(165 ,500천원,엘 씨엘(주), ~17.3.31)
6	종각옆	관철동 45-6	13	노상	1	500원	10:00 ~22:00	10:00 ~18:00		민간 재위탁(166 ,999천원, 문중남, ~16.11.1)
7	원서공원 옆	원서동 206	17	노상	2	250원	09:00 ~19:00	09:00 ~15:00		민간 재위탁(62, 900천원,설 동욱,~16.10 .13)
8	삼청공원 앞	삼청동 25-1	18	노상	2	250원	09:00 ~21:00	09:00 ~15:00		민간 재위탁(100 ,210천원,조 형래,~16.11 .1)

연 번	주차장명	소재지	주차 면수	구분	금지	요금 (5분당)	운영시간			비고
							평일	토요일	공휴일	
9	세운상가 밀	장사동 116-3	34	노상	1	500원	09:00 ~19:00	09:00 ~15:00		공단위탁
10	열린마당 옆	중학동 111	13	노상	1	500원	09:00 ~19:00	09:00 ~15:00		민간 채위탁(58, 300천원,한 지선,~16.1 1.1)
11	명광교회 옆	명륜 3가 12	8	노외	2	250원	00:00 ~24:00	00:00 ~24:00	00:00 ~24:00	민간 채위탁(21, 550천원,효 인산업,~17 .7.14)
12	창이공영	창신동 23-611	20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3	송인1기계 공영	송인동 55-2	38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4	누상공영	누상동 166-50	45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5	낙산공영	창신동 23-343	50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6	창신3제2 공영	창신 3동 23-341	25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7	신교공영	신교동 66	158	노외	3	150원	거주자우선주차장, 시간제 월~일 (00:00~24:00)			공단위탁 (23면 시간제, 나머지는 거주자우 선주차장)

연 번	주차장명	소재지	주차 면수	구분	급지	요금 (5분당)	운영시간			비고
							평일	토요 일	공휴일	
18	행촌공영	행촌동 210-35	12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19	송인제3공 영주차장	송인동 277-8	27	노외	1	400원	거주자우선주차장,시간 제월~금(09:00~18:00)			공단위탁 (23면 거주자, 빈구획 평일만 유료시간 공영제로 운영(시범 운영중)
20	송인2공영	송인동 746	15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1	동송공영	동송동 31-35	26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2	이화공영	이화동 13-2	101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3	명륜1가제 1공영	명륜1가 5-14	51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4	창일공영	창신동 82	86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5	서인사마 당	견지동 85-18	45	노외	1	400원	08:00 ~22:00	08:00 ~22:00	08:00 ~22:00	공단위탁
26	명륜3가공 영	명륜3가 1-29	42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
연 번	주차장명	소재지	주차 면수	구분	급지	요금 (5분당)	운영시간			비고
							평일	토요일	공휴일	
27	명륜1가 제2공영	명륜1가 7-69	40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8	명륜1가 제3공영	명륜1가 7-32	19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29	교남공영	행촌동 1-53	28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0	창신3 제1공영	창신3동 23-346	78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1	삼청 제3공영	삼청동 157-6	4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2	삼청공영	삼청동 5-2	27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3	동송동 제2공영	동송동 2-2	10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4	옥인공영	옥인동 47-469	15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5	사직공영	사직동 262-84	20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6	승인4공영	승인동 471외 2필지	23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7	효자공영	효자동 68-1	26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8	부암공영	부암동 365-1	9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39	옥인 유희지 1	옥인동 47-140	4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40	옥인 유희지2	옥인동 47-45외 1필지	4	노외	5		거주자우선주차장			공단위탁

서울 사물인터넷(IoT) 도시 조성

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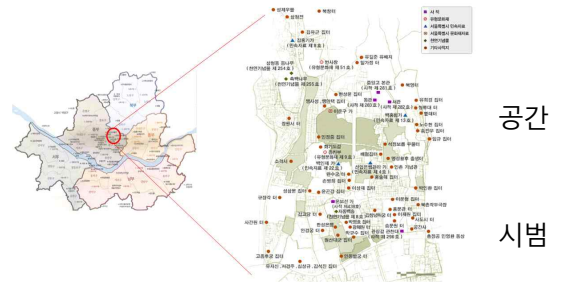
사업개요

· 목 적

- 사람, 사물, 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(IoT)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, 사물인터넷(IoT)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, 복지, 교통, 관광, 환경 등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추진

· 사업개요

- 사물인터넷(IoT)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공간과 디지털이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시티 조성
 - ⇒ 1단계('15년) : 북촌을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, 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향 도출
 - ⇒ 2단계('16년 ~): 서울시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



※'북촌'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징성을 지닌 전통한옥 밀집지역으로서,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과 관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지역임

추진배경

· 사람, 사물, 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(IoT) 시대 도래

- IT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, 최근에는 네트워크,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사물인터넷(IoT)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
- 정부(미래창조과학부)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('14.5월)하고 초연결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노력



·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oT 기술 활용 필요성 대두

-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은 IoT 기술 활용 확산 중
- Io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, 복지, 교통, 관광,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필요

디지털 서울 현황

· 세계도시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리더, '서울시'

-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국가('10~'14년) '대한민국'의 수도, '서울시'
-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(WeGO) 창립('10.9월) 및 의장도시
 - ▶ 바르셀로나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파리, 베를린 등 95개 회원 ('15.8월 현재)
-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으로 세계적 전자정부 리더십 확보 지속 노력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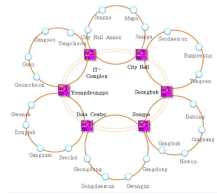


· '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' 6회 연속 1위 도시('03~'14년)



- 세계 대도시 웹기반 행정서비스 평가결과 (미국 럿거스대학교 전자정부 연구소)
 - ※ 1위 서울(85.8), 2위 뉴욕(66.15), 3위 홍콩(60.32)
- 특히, 시민 참여기회 지속 제공에 따른 정책 반영 부분 높이 평가

·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 환경 제공



- 지하철 노선을 활용한 광통신 자가망 구축 운영 (e-Seoul Net, u-Seoul Net)
- 무료 WiFi 존을 설치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민참여 환경제공
 - ※ 향후, 이동하는 버스까지 서울 공공WiFi 확대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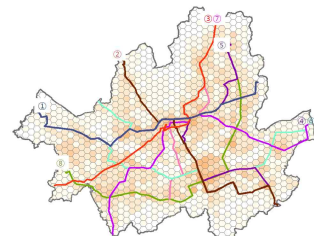
·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 및 공유



- 공문서, 회의록 등 행정정보는 정보소통광장(<http://opengov.seoul.go.kr>)을 통해 즉각 공개
 - ※ 세계최초 결재 완료된 공문서 전면 공개 (2014. 3. ~)
- 공공데이터는 열린데이터광장(<http://data.seoul.go.kr>)을 통해 공유되어 새로운 가치 창출

· IT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노력

- '빅데이터'를 시정에 접목해 복지,경제,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 노력
 - 특히, '심야버스노선 최적화'(올빼미 버스)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호평
 - ※ 민·관협력으로 이동통신사 30억건의 통화량 데이터와 500만건의 차 데이터 분석



택시승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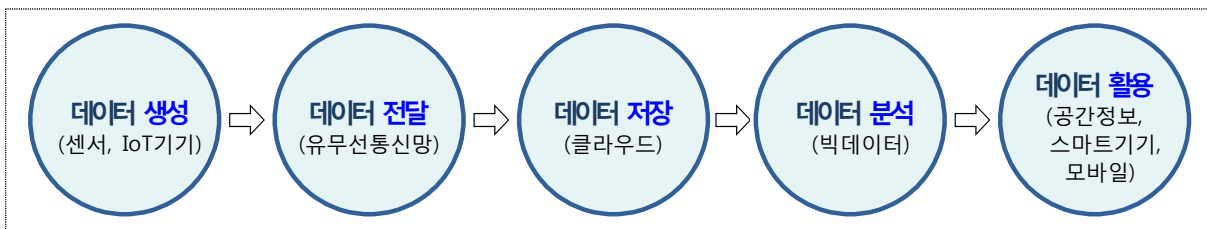


- 모바일 투표시스템 'm-Voting' 등 시민 참여 수단 지속 확대제공 등

사물인터넷(IoT) 기반의 디지털 서울 발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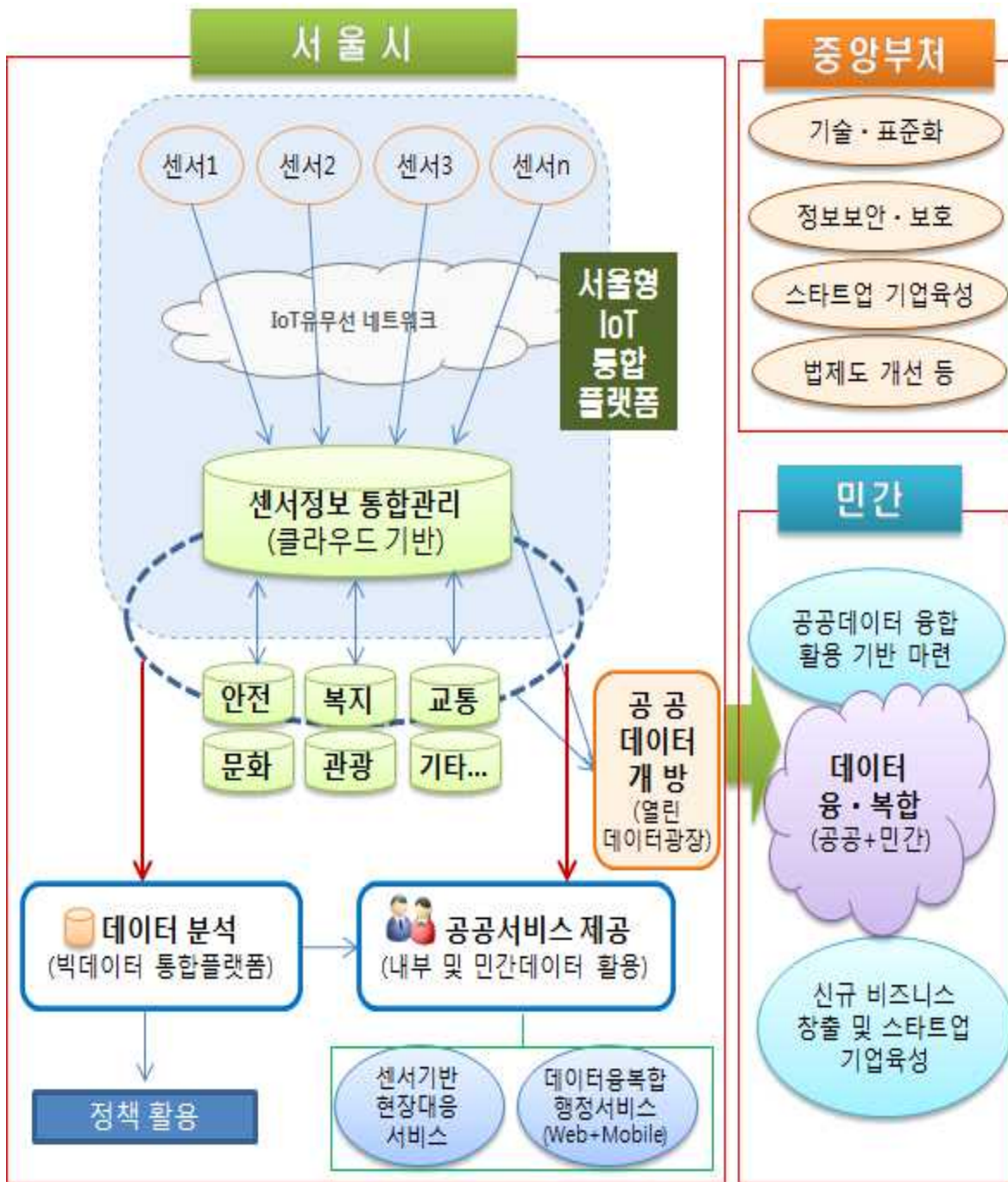
- **공공의 역할에 충실한 데이터 생성·관리 및 개방 정책 추진**
 - 안전, 복지 등 민간에서 투자하기 곤란한 도시 기반 인프라 정보는 공공에서 구축하되,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서비스는 민간에서 구축토록 적극지원
 -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서울시 노하우 접목 확산 추진
- **공공 센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'서울형 IoT통합 플랫폼' 구축**
 -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IoT 표준과 상호호환 가능하도록 구축
 - 기술표준, 정보보안·보호, 법제도, 스타트업 기업 육성 지원 정책 연동
 - 미래창조과학부, NIA, NIPA, KIS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
- **복촌 IoT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IoT 투자 기폭제 역할 수행**
 - 센서 기반 O2O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비용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촌을 비콘 등 센서 기반 서비스 테스트베드화하여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실증 성공사례로 조성
 - 공공에서 개방한 센서 정보 등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(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)
- **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물인터넷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**
 - 5년 단위의 서울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('16년~'20년)인 「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」수립시 사물인터넷(IoT) 중장기 발전전략 연계 수립 추진
 - 사물인터넷(IoT)을 통해 생성, 유통, 저장, 분석, 활용되는 데이터의 전(준) 주기적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안전, 복지, 교통, 관광, 환경 등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및 적용

데이터 생애주기별 사물인터넷(IoT) 활용 전략



- 데이터 **생성** : 도시 곳곳에 설치되는 사물인터넷(IoT) 센서들에 의한 24시간 데이터 생성
- 데이터 **전달** :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구축된 광통신 자가망인 'u-Seoulnet' 기반의 유·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전달
- 데이터 **저장** :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기반 마련 추진
 - IT Complex('16.2월 준공예정)에 대규모 클라우드 센터 구축 예정
- 데이터 **분석** : 안전, 복지, 문화, 교통 등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·활용 가속화
 -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빅데이터(BigData)를 활용한 과학적 데이터로 지원
- 데이터 **활용** : 서울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정제된 데이터는 시민, 기업들과 공유되어, 도시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

< 서울시 사물인터넷(IoT) 도시조성 개념도 >



- ☞ 2015년 북촌을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으로 조성(1단계)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한 후, 2016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(2단계) 추진

북촌 사물인터넷(IoT) 테스트베드(Testbed) 추진 계획

· 시범사업 추진방향

-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인 북촌을 사물인터넷(IoT)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,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 마련 추진
- 북촌 시범사업은 市에서는 필수 인프라를 제공(전면 개방)하고, 민간에서 관련 인프라를 융합하여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

☞ 북촌을 테스트베드&리빙랩화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IoT 생태계 조성



· 북촌 지역 현황 및 특성

- 위치/면적 : 경복궁과 창덕궁의 울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가회동, 삼청동 일대 1,128,372.7m²
- 도시계획 :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수립 중
 - ※ 종로구 가회동 11번지, 31번지, 33번지 일대는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
- 주요특징

- 서쪽에는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, 동쪽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궁, 후면에는 백악산과 삼청공원이 위치
- 사적, 민속자료, 문화재, 옛길, 한옥, 갤러리, 카페 등 볼거리, 즐길거리가 많아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(연간 100만명)
 - ※ 월평균 관광객 수 : '12년 49,458명, '13년 70,755명, '14년 85,939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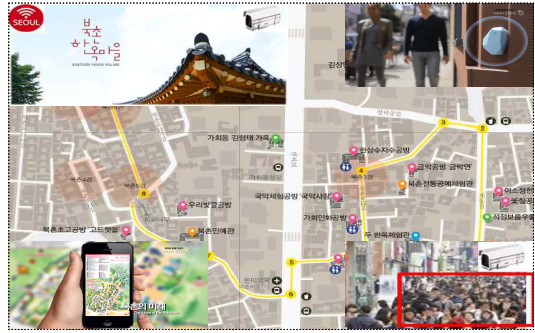


- 북촌 문제점 및 시사점
 -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증대 (쓰레기, 소음, 담배, 도로변 관광버스 불법주차, 사생활침해 등)
 - 관광수요 증가로 관련 문의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, 관광편의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필요
 - 목조건물이 많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화재위험이 산재하고, 대부분이 좁은 언덕길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

- ☞
- IoT기술을 활용하여, 북촌지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 마련
 - 서울의 전통과 첨단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제공
 - IoT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

· 추진현황 ('15년)

- 북촌 전 지역에 서울시 공공WiFi(무료) 구축
 - 주요 설치지점 : 북촌 도보 관광코스 및 북촌8경 중심
- 주민안전, 유동인구 파악 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
- 북촌 보행지도·다국어콘텐츠 개발 및 개방(Open API)
 - 전면 개방된 북촌 보행경로 지도정보와 다국어 음성안내
츠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에서 관광편의서비스(App) 제공
- 개방형 공공 IoT 표준 플랫폼 구축
 - 공공 센서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및 데이터 개방이 가능하도록 IoT 표준 플랫폼 구축 (1단계)
 - 글로벌 기술표준 준수, 정보보안·보호 방안 반영 등 중앙정부(미래창조과학부)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
※ 향후,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 보급 추진(중앙정부 협업)
- 실시간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'열린데이터 광장'(http://data.seoul.go.kr) 개선 추진 등
 - 센서 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시각화 서비스 강화



콘텐츠

❖ 북촌 IoT 테스트베드 협력기관 (중앙정부, 민간기업 등)



향후 추진계획 ('16년 이후)

-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(IoT) 도시 기반 조성
 - 사물인터넷(IoT) 특화 시범지역 확대 및 광역단위 서비스 실증사업 등 서울시 전역 확산사업 추진
-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 개설·운영
 - 시민 참여형 빅데이터 분석 랩 : 분석랩 공간 마련, 분석가 모집, 분석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등
 - 클라우드 센터 :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, 서버, 스토리지 등 관련 인프라 및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제공
 - 디지털 서울 Lab (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) 개설·운영
 - 시민, 개발자들이 IoT 접목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자유롭게 실험·제작할 수 있는 공간 (오픈랩, 창의공작소, 테스트베드 제공)

관 계 법 령

□ 「주차장법」

[시행 2016.7.20.] [법률 제13804호, 2016.1.19., 일부개정]

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자동차(이하 "경형자동차"라 한다)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"환경친화적 자동차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.19.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·군관리계획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,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제8조(노상주차장의 관리)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"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"라 한다)가 관리한다.

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., 2016.1.19.>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

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6.1.19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6.1.19.>

[전문개정 2010.3.22.]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6.4.28.] [법률 제13871호, 2016.1.27., 일부개정]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6.1.27.]

부칙 <제13871호, 2016.1.27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론 요지 : (없음)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년 10월 27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6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심사보류
제2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6.10.24.) 재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)

가. 상정 이유

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(2015. 1. 6.)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

나. 주요 내용

- 1)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(안 제1조, 제5조)

- 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조항 삭제(안제4조, 제7조, 제10조)
- 3)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관계법령 법률명 정정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안 검토의견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(2015. 1. 6.) 사항과 관계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이 제때 개정되지 않고 누락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.
-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과태료·수수료에서 과태료 부분을 삭제.
-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, 도로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에 관한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,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, 우리구 조례에서는 부당점용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안 제5조와 관련,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점용료가 50만원

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,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- 안 제8조제1항 관련,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69조제1항은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·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

우리구 조례는 '할수 있다'로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고, 「도로법」 제69조제2항은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한 경우에,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1조를 준용하도록만 정하고 있음에도,

우리구 조례는 「도로법」이 정하지 않은 내용인 “ 「국세징수법」 제23조(독촉과 최고) 조항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고서 발급 등도 준용하도록 조례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수정하게 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- 안 [별표] 제10호와 관련하여,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르면, 점용료는 시행령 [별표 3]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우리구 조례 [별표]에서는 법 시행령 [별표 3]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 중 제10호(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,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,
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)에 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론 요지 (없음)

6. 수정안의 요지 (없음)
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(종로구청장인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함)